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5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

2. 개정이유

- 저연차 재단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적응, 일·가정 양립을 위하여 소속직원의 복무규정상 특별휴가의 일부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29조(특별휴가)
 -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 새내기 휴가(5일) 신설(13항)
 - 직원 본인의 생일 달에 1일의 생일 휴가 신설(14항)
 - 배우자 포함 난임 치료시술시 휴가 신설(15항)
 - 임신 검진시 배우자에게 2일 동행휴가 신설(16항)

제19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6월 24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 현

